

1. 개정이유

최근 첨단 디지털기술 발전과 증강·가상현실(AR·VR) 기술을 활용한 항공기 교육 콘텐츠 개발·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에 증강·가상현실(AR·VR) 기술을 활용한 정비 교육 품질 제고와 창의적 교육 환경 조성을 유도하고 전문교육기관이 첨단 기술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최근 기술개발 등으로 기존의 드론과는 구조적으로 다른 새로운 형태인 무인수직이·착륙기 등이 도입·운영되고 있어 관련 기체에 대한 분류체계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초경량비행장치 동력원이 전기모터인 동력비행장치 기준 신설(안 제5조)

현행 법률 상 배터리를 사용하여 동력을 얻는 무인동력비행장치의 자체 중량 측정기준이 불명확하여 자체중량에 배터리 무게를 포함시키도록 함.

나. 무인비행장치의 분류에 복합형무인동력비행장치 신설(안 제5조, 제305조제1항제4호가목, 제306조제1항)

무인비행장치 종류 및 조종자증명을 발급받아야 무인비행장치 종류에 ‘복합형무인동력비행장치’를 추가함.

다.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면제 대상 추가(안 제308조제1항)

「수산생물질병법」상 수산생물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게 무인비행장치를 비행하려는 경우에도 비행승인 면제토록 함

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임한 안전개선명령에 관한 사항 구체화(안 제313조)

안전개선명령 사항 중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마. 전문교육기관 항공정비사과정 지정기준 완화(안 별표 12제9호다목 2)·제9호다목2)제5호가목))

그간 정비 전문교육기관이 항공기 3대를 필수 구비해야 했으나, AR·VR 기반 항공정비 교육 장비를 도입하는 경우 항공기로 인정하여 실제 항공기를 2대만 구비해도 가능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해당없음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동력원이 전기모터인 동력비행장치에 대해서는 나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제1호가목 중 “115킬로그램”을 “115킬로그램(동력원이 전기모터인 경우에는 배터리 무게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5조제5호가목 중 “150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를 “150킬로그램(배터리무게를 포함한다.) 이하인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무인멀티콥터 또는 복합형무인동력비행장치”로 한다.

제5조제5호나목 중 “ 180킬로그램 이하”를 “180킬로그램 이하(배터리무게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305조제1항제4호 가목 중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 중에서”를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무인멀티콥터 또는 복합형무인동력비행장치 중에서”로 한다.

제306조제1항제4호가목 중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를 “무인헬리콥터, 무인멀티콥터 또는 복합형무인동력비행장치”로 한다.

제308조제1항제3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산생물(동물·식물)전염병의 예방 또는 확산 방지를 위하여 소독·방역업무 등에 긴급하게 사용하는 무인비행장치

제31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안전관리대책의 변경

4. 인명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총포화약법」에 따른 화약류 등의 사용 제한

5.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가 운용중인 작업환경 내 조종자의 비행을 방해하는 위험요소 제거

별표 12 제9호다목2)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증강·가상현실(AR·VR) 기반 항공정비 교육 장비를 도입할 경우 정비일반, 항공기체, 항공발동기, 전자·전기·계기 과목 교육에 적합할 것
별표 12 제9호다목2)에 제5호가목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증강·가상현실(AR·VR) 항공정비 교육 장비도 항공기로 인정(기관당 최대 1대)

별표 12 제9호바목에 1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실물항공기 1대를 AR·VR 기반 항공정비 교육 장비로 대체할 경우 해당 장비 활용계획이 포함된 교육 과목 및 시간
별표 20의2 제5호마목의 항공안전장애내용란 중 “최대허용범위”를 “최

대수리허용범위”로 하고, “기술자료를”를 “기술자료 또는 수리지침을”으로 한다.

별지 제10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20호서식 중 “현장확인검사회망일”을 “현장심사회망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초경량비행장치”를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로 하며, 같은 서식 중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한다.

별지 제121호서식 중 “성명·주소”를 “성명”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한국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으로 한다.

별지 제12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6조제1항제4호가목의 복합형무인동력비행장치 조종자증명은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운항조건 및 제한사항 Operation conditions and limitations

Number of Validation:	
Company Registered name as Stated in the approval document:	
Address of Principal Place of Business	
Mailing address:	Telephone number:
	Fax number:
	E-mail:
Trading name(s) if different than the Registered name stated on the Authorization, under which the operator may operate:	
The types of operations authorized:	
☐ Passenger and Cargo	☐ Scheduled Operations
☐ Passenger Only	☐ Charter Flight Operations
☐ Cargo Only	☐ Dangerous Goods
Destination airport(s) in Republic of Korea to be served:	
Aircraft types authorized for use:	
Validity period	
☐ From:	To:
☐ Pursuant to Article 282 of Enforcement Regulation of Aviation Act, this document shall remain in effect until suspended or restricted.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일
신 청 인	성명/명칭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비행장치	종류/형식	용도
	제작사	제작번호
	소유자	(전화:)
	신고번호	안전성인증서번호 (유효만료기간) (. .)
비행계획	일시 또는 기간(최대 12개월)	구역
	비행목적/방식	보험 [] 가입 [] 미가입
	경로/고도	
조 종 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자격번호 또는 비행경력	
동 승 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탑재장치	무선전화송수신기	
	2차감시레이더용트랜스폰더	

「항공안전법」 제12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8조제2항에 따라 비행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항공청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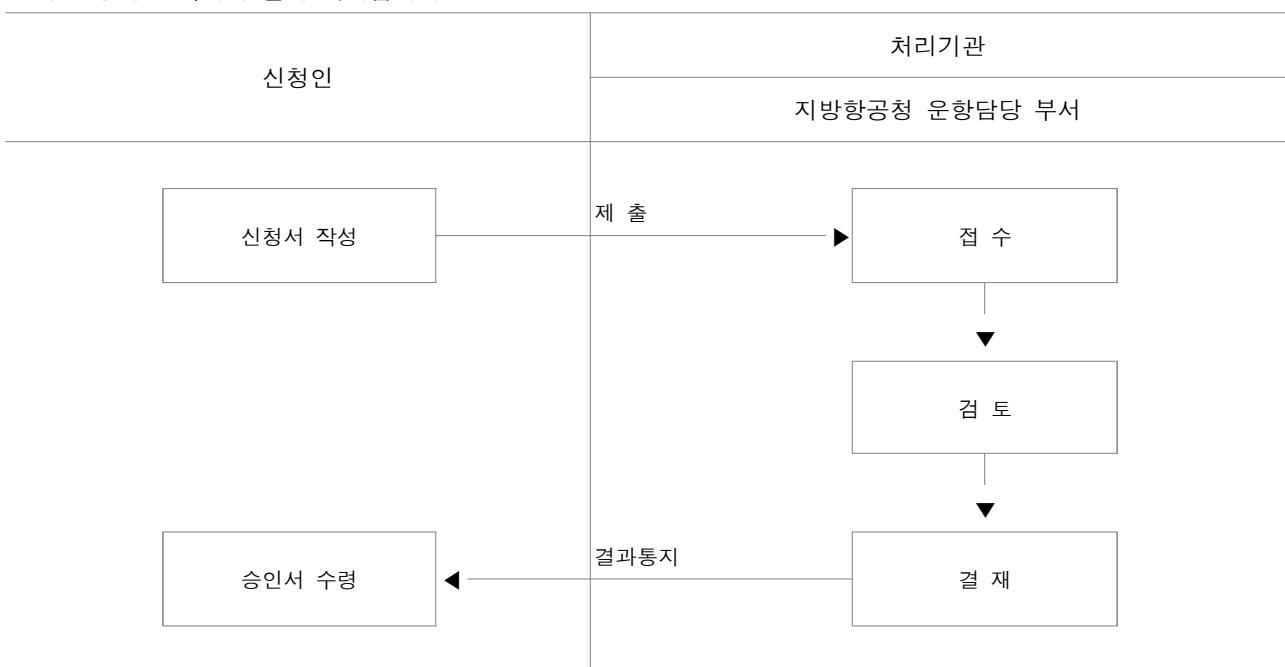
작 성 방 법

-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초경량비행장치 또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5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인증의 대상이 아닌 초경량비행장치의 경우에는 비행장치란 중 신고번호 또는 안전성인증서번호를 적지 않아도 됩니다.
-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 초경량비행장치이거나 무인비행장치인 경우에는 동승자란을 적지 않아도 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증질지(80g/㎡)]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초경량비행장치의 기준) 법 제2조제3호에서 “자체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및 무인비행장치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무인비행장치, 회전익비행장치, 동력패러글라이더 및 낙하산류 등을 말한다.	제5조(초경량비행장치의 기준) -- ----- ----- ----- ----- ----- ----- ----- ----- ----- -----.
1. 동력비행장치: 동력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고정익비행장치. <단서 신설>	1. ----- ----- ----- ----- ----- ----- <u>. 다만, 동력원이 전기모터인 동력비행장치에 대해서는 나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u>
가. 탑승자, 연료 및 비상용 장비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u>115킬로그램</u> 이하일 것.	가. ----- ----- ----- ----- <u>115킬로그램</u> (<u>동력원이 전기모터인 경우에는 배터리 무게를 포</u>

나.·다. (생략) 2. ~ 4. (생략) 5. 무인비행장치: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행장치 가. 무인동력비행장치: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u>150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u> 나. 무인비행선 :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u>180킬로그램 이하</u>이고 길이가 20미터 이하인 무인비행선 6. ~ 9. (생략) 제305조(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 인증 대상 등) ① (생략) 1. ~ 3. (생략)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인비행장치	<u>함한다</u>). ----- 나.·다. (현행과 같음) 2. ~ 4. (현행과 같음) 5. ----- ----- ----- 가. ----- ----- -----<u>150킬로그램(배터리 무게를 포함한다.) 이하인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무인멀티콥터 또는 복합형 무인동력비행장치</u> 나. ----- ----- 180킬로그램 이하(배터리 무게를 포함한다.) ----- ----- ----- 6. ~ 9. (현행과 같음) 제305조(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 인증 대상 등) ①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 -----
---	---

가. 제5조제5호가목에 따른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 중에서 최대이륙중량이 25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

나. (생략)

5. ~ 6. (생략)

② (생략)

제306조(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 증명 등) ① 법 제125조제1항 전단에서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말한다.

1. ~ 3. (생략)

4. 무인비행장치.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제5조제5호가목에 따른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 중에서 연료의 중량을 포함한 최대이륙중량이 250그램 이하인 것

가. -----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무인멀티콥터 또는 복합형무인동력비행장치 -----

나. (현행과 같음)

5.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06조(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 증명 등) ① -----

1. ~ 3. (현행과 같음)

4. -----.

가. ----- 무인헬리콥터, 무인멀티콥터 또는 복합형무인동력비행장치 -----

나. (생 략)

5. · 6. (생 략)

② ~ ⑦ (생 략)

제308조(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 승인) ① 법 제127조제2항 본문에서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란 제5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초경량비행장치는 제외한다.

1. · 2. (생 략)

3.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제1호에 사용하는 무인비행장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인비행장치

가. · 나. (생 략)

<신 설>

4. · 5.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5. · 6.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308조(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 승인) ① -----

-----.

-----.

1. · 2. (현행과 같음)

3. -----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산생물(동물·식물)전염병의 예방 또는 확산 방지를 위하여 소독·방역업무 등에 긴급하게 사용하는 무인비행장치

4. · 5. (현행과 같음)

② ~ ⑨ (현행과 같음)

제313조(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자에 대한 안전개선명령) ----

-----.

1. · 2. (현행과 같음)

3. 안전관리대책의 변경

4. 인명이나 재산에 위협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총포화약법」에 따른 화약류 등의 사용 제한

5.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가
운용중인 작업환경 내 조종자
의 비행을 방해하는 위험요소
제거